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5
----------	-----

제 출 일 : 2026. 3. 5.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7조, 제20조의3, 제35조)
- 별표 서식 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분 삭제 (안 별표 4, 5)
- 이불전용 수거봉투 조례 반영 (안 별표 4, 5, 6)
-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서 배부대상 추가(안 제7조, 별지 제3호, 제4호)

3. 참고사항

- 부서협의결과
 - 비용추계 : 미첨부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24. ~ 2026. 1. 13. / 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의견제출 0건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전입신고한 후”를 “전입신고일로부터”로, “읍·면·동사무소에서 1가구당”을 “읍·면·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구당”으로, “배부받을 수 있다”를 “배부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마크 배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이상부터 200세대 초과시마다”를 “이상부터는 200세대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용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등

- 가.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660리터 이상의 보관용기를 1개 이상 설치
- 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마다 1,100리터 이상의 보관용기

(기계식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 재질)를 1개 이상 설치

제17조제3호 중 “종량제봉투 및 수수료납부필증”을 “종량제봉투”로, “같다”를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종량제봉투 제외)는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의3제3호 중 “별표 4”를 “별표 4 및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자원순환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양 인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원순환정책팀장 강 정 모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동 명 (031-590-8280)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종량제봉투의 가격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제17조, 제19조의2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

$$(l\text{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 \text{판매이익금}$$

- 주) 1) l 당 처리비용은 쓰레기의 수집·운반비용과 매립 및 소각 등의 처분비용과 봉투제작비 등을 합하여 산정한다.
 2) 주민부담률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 수집·운반·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 100
 3)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4)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익금은 종량제봉투 가격의 7%로 한다.

2. 종량제봉투 가격

구 분	봉투용량(l)	판 매 가 격(원)	비고
음식물류	1	50	
	3	130	
	5	210	
	10	420	
	20	840	
일반용	5	190	
	10	370	
	20	740	
	30	1,110	
	50	1,850	
	75	2,780	
재사용	10	370	
	20	740	
규격마대	20	1,200	불연성폐기물
	50	3,000	
	75	4,500	소규모배출사업장 (가연성)폐기물
이불전용	125	3,000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5]

종량제봉투 등의 규격 및 색상(제18조, 제19조의2 관련)

1. 종량제봉투 규격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의 규격(cm) (가로 × 세로)	색 상	비고
음식물류	1	19 × 24.5	주황색(투명)	
	3	22 × 39.5	주황색(투명)	
	5	26 × 46.5	주황색(투명)	
	10	33 × 69.5	주황색(투명)	
	20	42 × 69.5	주황색(투명)	
일반용	5	26 × 46.5	흰색(반투명)	
	10	33 × 69.5	흰색(반투명)	
	20	42 × 69.5	흰색(반투명)	
	30	48 × 78.5	흰색(반투명)	
	50	56 × 91.5	흰색(반투명)	
	75	65 × 103.5	흰색(반투명)	
재사용	10	36 × 53.5	노란색(반투명)	
	20	45 × 65.3	노란색(반투명)	
공공용	30	48 × 78.5	엷은청색(반투명)	
	50	56 × 91.5	엷은청색(반투명)	
	75	65 × 103.5	엷은청색(반투명)	
규격마대	20	42 × 69.5	흰색	불연성폐기물
	50	56 × 91.5		
	75	65 × 103.5	적색	소규모배출사업장 (가연성)폐기물
이불전용	125	80 × 121.5	엷은녹색	

2.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규격

구 분	신고필증의 규격(cm) (가로 X 세로)	색 상	비고
대형폐기물 배출용 스티커	14 × 6	파랑색 (1,000원권)	신고필증에는 기관명,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노랑색 (2,000원권)	
		주황색 (3,000원권)	
		초록색 (5,000원권)	
		분홍색 (10,000원권)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규격의 편차범위는 10%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9조 관련)

<p>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p>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p>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p>남양주시 마크 또는 슬로건</p> <p>종량제봉투(ℓ) --일반용--</p> <p>General purpose garbage bags / 普通垃圾袋</p> <p>1. 재활용가능자원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p> <p>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p> <p>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주 의*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봉투 안에 고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것(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을 넣으면 수거원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남양주시장</p> <p>연락처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 000-0000)</p> <p>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p>	<p>남양주시 마크 또는 슬로건</p> <p>재사용 봉투(ℓ)</p> <p>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p> <p>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p> <p>1.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작된 봉투로 쇼핑용 봉투로 사용한 후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는 봉투입니다.</p> <p>2. 이 봉투는 남양주시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p> <p>3. 연락처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000-0000</p> <p>*주 의*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봉투 안에 고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것(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을 넣으면 수거원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p>	<p>남양주시 마크 또는 슬로건</p> <p>종량제봉투(ℓ) --공공용--</p> <p>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p> <p>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등으로 배출하는 쓰레기를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p> <p>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주 의*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봉투 안에 고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것(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을 넣으면 수거원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남양주시장</p> <p>연락처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 000-0000)</p> <p>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p>

<p>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p>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p>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p>남양주시 마크 또는 슬로건</p> <p>종량제봉투(ℓ) --음식물류-- 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p> <p>1. 이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p> <p>2.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에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3.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p> <p>남양주시장</p> <p>연락처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 000-0000)</p> <p>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p>	<p>남양주시 마크 또는 슬로건</p> <p>종량제봉투(ℓ) --규격 마대-- 불연성폐기물 전용</p> <p>1. 이 마대는 가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안타는 쓰레기만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p> <p>2. 재활용가능자원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p> <p>3. 이 마대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주 의* -봉투안에 고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것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강싼 후 배출)을 넣으면 수거원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남양주시장</p> <p>연락처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 000-0000)</p> <p>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p>	<p>남양주시 마크 또는 슬로건</p> <p>종량제봉투(ℓ) --규격 마대-- 소규모배출사업장 (가연성)폐기물 전용</p> <p>1. 이 마대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p> <p>2. 재활용가능자원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p> <p>3. 이 마대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주 의* -봉투안에 고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것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강싼 후 배출)을 넣으면 수거원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남양주시장</p> <p>연락처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 000-0000)</p> <p>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p>

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남양주시 마크 또는 슬로건

이불전용 수거봉투(125ℓ)

1. 이 봉투에는 이불,베개,커튼 등 부피가 크고 가벼운 폐기물만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이 봉투에 같이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주 의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봉투 안에 **고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것**(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을 넣으면 **수거원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

연락처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 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1. 봉투 앞면의 표시는 쓰레기 성상 및 종류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2. 묶는 부분은 봉투개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끝이나 지퍼 등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중량제봉투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위조방지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p> <p>① ~ ③ (생 략)</p> <p>④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 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구체적 인 배출요령은 「<u>남양주시 음 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u>」에 따른다.</p> <p>3. ~ 5. (생 략)</p> <p>⑤ ~ ⑦ (생 략)</p> <p>⑧ 시장은 시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2의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는 <u>전입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서 1가 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받을 수 있다.</u></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남양주시 음 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 ----- ----- <u>전입신고일로부터</u> - ---- <u>읍·면·동사무소에 별지 제 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u> <u>가구당</u> ----- <u>배부받을</u></p>

수 있으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마크 배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 가. (생략)

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까지는 20㎡ 이상의 보관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200세대 이상부터 200세대 초과시마다 20㎡ 이상의 보관시설을 1개소씩 추가 설치(개소당 폐기물 보관용기 7종(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폐건전지 등) 이상 설치)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이상부터는
200세대마다 -----

2.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등: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다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
여 배출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일반용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등

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
세대 미만까지는 660리터
이상의 보관용기를 1개 이
상 설치하고, 50세대 이상
부터 50세대 초과시마다 1,
100리터 이상 보관용기를
1개(기계식상차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 이상 설
치

4. (생략)

②·③ (생략)

제17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2. -----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
물 관리 조례」 제15조-----

-----.

3. 일반용 종량제봉투 보관시
설 등

가. 20세대 이상 50세대 미
만 공동주택: 660리터 이
상의 보관용기를 1개 이
상 설치
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마다 1,100리터 이
상의 보관용기(기계식상차
용 고밀도폴리에틸렌 재
질)를 1개 이상 설치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의 부과·징수) -----

호에 따른다.

1. 2. (생략)

3. 종량제봉투 및 수수료납부필
증의 가격 산정방법과 판매가
격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시
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3. 종량제봉투 등을 별표 4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
매한 경우

4. (생략)

제3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
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2. (현행과 같음)

3. 종량제봉투-----

----- 같으며, 음식물
류 폐기물 수수료(종량제봉투
제외)는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

-----.

1. 2. (현행과 같음)

3. ----- 별표 4 및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4. (현행과 같음)

제3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남양주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종량제봉투 종류 등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전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모놀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5A경기남양094)

1. 자원순환과-38545(2025. 11. 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5A경기남양094) 1부. 끝.

남 양 주



주무관	이진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배진희	복지국장	전결 2025. 12. 1. 일련번호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38606	(2025. 12. 1.)		협수	자원순환과-38755	(2025. 12. 2.)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공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3	팩스번호	031-590-2269		/ yhjia0127@nra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해주는 남양주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남양094			
정책명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이동명	전화번호	031-590-828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1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제명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및 용어 정비○ 종량제봉투 종류 추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11월 29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자원순환과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검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5-93)

자원순환과-38548(2025.11.28.)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감 사 문 관 ㄷ

주무관	김주현	행정윤리팀장	교욱	감사관	2025. 12. 2.	문경서
협조자						
시행	감사관-13818	(2025. 12. 2.)		접수	자원순환과-38833	(2025. 12. 2.)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봉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5-남양주-93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환경8급 이동명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5. 12. 2.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5년 12월 2일</p> <p>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p> <p>(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p> <p>자원순환과장 귀하</p>			

붙임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 남양주시 자원순환과-38547(2025. 11. 28.)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우리 시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과 개정된 타 자치법규(조례)를 반영하는 등 폐기물의 배출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끝.

의 회 법 무 영 파 장 영

주무관	조영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2025. 12. 1. 양기영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15328	(2025. 12. 1.)		접수	자원순환과-38606 (2025. 12. 2.)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공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5 입법예고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자원순환과-41482(2025. 12. 23.)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4.(수) ~ 2026. 1. 13.(화) / 20일간
-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의견제출 0건
- 마.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입법절차 이행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이동영	자원순환정책 팀장	김병호	자원순환과장	정인수	환경국장	전경 2025. 1. 16. 남양주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한지혜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시행	자원순환과-1736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김춘로 1037 (금곡동)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8280	팩스번호	031-560-2259		/ bporpor@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